#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97

발의연월일: 2024. 9. 2.

발 의 자:서미화・이기헌・윤종군

황정아 · 조인철 · 조계원

이상식 • 이병진 • 김예지

강준현 • 박희승 • 박지원

송재봉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임.

현행법에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종전의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음. 3급 중복은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를 뜻하므로 종전의 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현됨에도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

는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종전의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 수급에 있어서의 중 증장애인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법률 제 호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이루어지는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1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	
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	
으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같은 법 제2조제2항에</u>
사람을 말한다.	따라 이루어지는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
	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